



퇴직연금

## 2020 Retirement Pension Plan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2020 유안타증권

### Contents

- \* 2020년 변경되는 퇴직연금 제도
- \* 퇴직연금제도 일반 사항
- \* 노후설계 및 투자관련 사항
- \* 우리가 궁금해 하는 퇴직연금에 관한 Q&A
- \*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연금보다 교육, 교육보다 관계>



# 2020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행복한 생각 유안타증권이 함께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함께 3층 사회보장체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안타증권의 퇴직연금은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우편물을 E-mail로 받아보세요

#### 우편통보지를 E-mail로 변경하는 방법

##### 1. 온라인에서 변경

- 개인형IRP

홈페이지([www.myasset.com](http://www.myasset.com)) (뱅킹/계좌/대출)개인정보조회/변경 및 통보지관리)에서 E-mail로 변경

- DC플랜 가입자

홈페이지([www.myasset.com](http://www.myasset.com)) 에서 E-mail 주소 등록 후 퇴직연금 홈페이지(My퇴직연금)기본정보) 가입자정보조회/변경)에서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 2. 유선변경 (고객센터☎1588-2600) 및 영업점)

가입자 본인 요청에 의하여 E-mail주소 등록 및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가능

# Contents

2020 변경되는 퇴직연금 제도	4
1. 퇴직연금제도 일반 사항	
01. 퇴직연금제도 개요	6
02.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9
03. 지연이자	10
04.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11
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12
06.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14
07. 수급권의 보호	14
08. 계약이전 절차	15
09. 과세체계	16
10. 확정급여형(DB)제도의 적립금 비율	20
2. 노후설계 및 투자관련 사항	
01.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	24
02. 노후설계의 중요성	24
03. 노후보장 체계	25
04. 노후자금 상세설계	25
05. 투자의 기본원칙	26
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28
3. 우리가 궁금해 하는 퇴직연금에 관한 Q&A	31
4.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연금보다 근육, 근육보다 관계>	41

# 2020년 퇴직연금 개정내용

## 1. 50세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증액 (700만원→900만원)

2019년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이상 장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2억원)이 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50세 이상인 개인형IRP가입자가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지방세포함)	공제한도	환급세액
5,500만원 이하(4,000만원이하)	16.5%	900만원	1,485,000
5,500만원 ~ 1.2억원(4천만원~1억원)	13.2%		1,188,000
1.2억원 초과(1억원초과)			700만원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900만원 납입시 연말정산 때 최대 1,48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 퇴직소득 연금으로 장기 수령시 연금소득세 하향 (11년차부터 기존 퇴직소득세 70%→60%로 인하)

현재 퇴직급여를 개인형IRP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수령시 이연 된 퇴직소득세의 70%만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일시금 대비 30% 절감) 이는 연금수령 기간에 관계없이 세율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연금수령 11년차부터 세율이 퇴직소득세의 60%로 인하됩니다.

연금수령 1년~10년차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고, **11년차부터는 이연퇴직 소득세의 60%가 적용됩니다**(40% 절감).

〈 50세 이상인 개인형IRP가입자가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 〉

수령기간	일시금	10년간 수령	20년간 수령
퇴직소득세	2,000만원	1,400만원	1,300만원
절감액(일시금 대비)	-	-600만원	-700만원

즉, 연금수령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절세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6개월이상의 요양)

**6개월이상의 요양**으로 인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요건이 강화됩니다.

시행일 이전까지는 사용된 의료비에 대한 조건이 없었으나, 시행일 이후부터는 의료비가 총연봉의 12.5%를 초과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시행일 2020.04.30).

# 1. 퇴직연금 제도 일반사항

---



## 101 퇴직연금제도 개요

### 퇴직급여 제도의 구성

2005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 퇴직연금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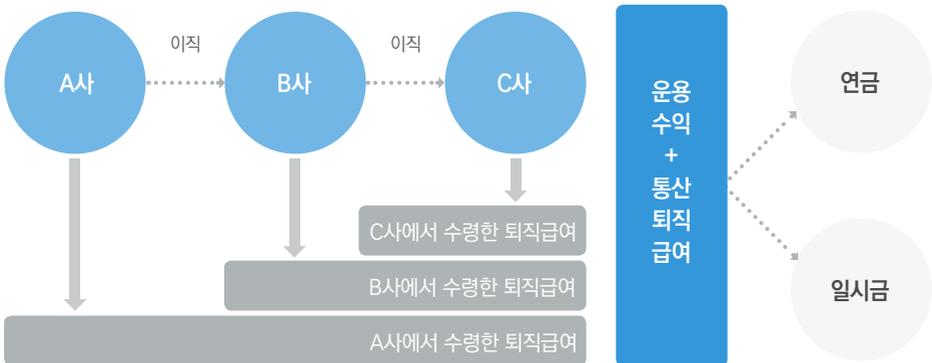
# I01 퇴직연금제도 개요

## 제도별 특징

<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제도</li> <li>사용자는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li> </ul>
<b>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li> <li>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별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시 가입자는 부담금 및 자기 책임하에 운용한 손익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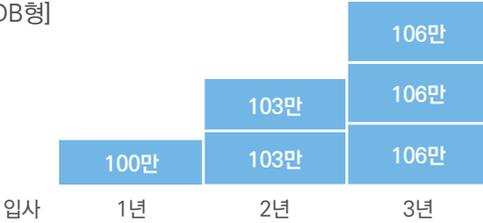
<b>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형: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규약신고 없이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li> <li>개인형: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입금하거나, 개인부담금을 적립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은퇴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제도</li> </ul>
---------------------------------	---



## I01 퇴직연금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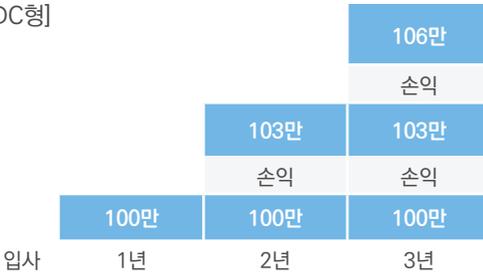
연봉 1,200만원(월100만원)에 입사 후 3년간 근무 후 퇴직 시  
(매년 임금상승률 3%, 수익률 3% 가정)

[DB형]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06만(임금상승분 포함) × 3 = 318만원  
임금상승률에 따라 퇴직급여 달라짐

[DC형]



(100만 + 3만) + (103만 + 6만) + 106만  
= 309만원 + 9만원(투자수익금) = 318만원  
운용성가에 따라 퇴직급여 달라짐

### 제도별 비교

구분	DB	DC	IRP	
			기업형	개인형
사용자부담금	법정 최소적립비율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사용자부담금 ± 운용손익	-	-
적립금 운용주체 및 수익귀속	사용자(기업)	가입자(근로자)		
중도인출	불가	가능(법정 사유 限)		
가입자부담금	불가	가능(연금계좌 합산하여 연1800만원限)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연금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102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기업형IRP
중도인출	불가능	적립금의 100%
담보제공	적립금의 50%	적립금의 50%

※ 당사: 현재 담보제공 가능 상품 없음

### 중도인출·담보대출의 법정 사유

법정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한 사업장 근로 동안 1회 限)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받은 경우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사유는 중도인출 불가, 담보대출만 가능한 사유)

## 103 지연이자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확정급여형(DB) 제외)

### 지연이자율

-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 → 연 10%
-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 → 연 20%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상기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4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떠한 급여금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text{평균임금} = \frac{\text{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주1)}}{\text{3개월 동안의 총 일수* 주2)}}$$

\* 주1) 임금총액: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될 금액으로 세액 공제전의 임금

\* 주2) 총 일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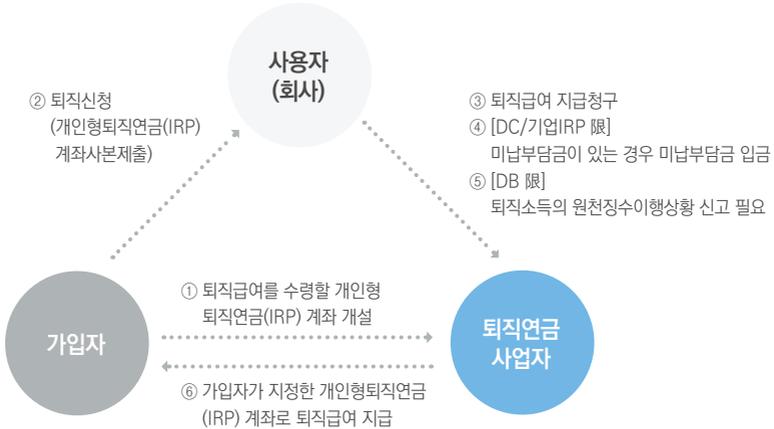


# I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① 만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 수령 시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 퇴직급여 지급절차



### 1.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개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합니다.

### 2. [퇴직의사 전달]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사본과 함께 퇴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 3. [퇴직급여 지급청구]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알리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퇴직급여지급청구서(당사양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DB 限), 임원퇴직급여한도금액확인서(DC/기업형IRP, 임원 퇴직의 경우 限)

## I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 4. [(DC/기업IRP 限) 미납부담금 납입]

가입자(퇴직예정자)의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못한 미납부담금이 있는 경우 납입이 필요합니다. 가입자의 퇴직연금에 불입된 사업주부담금+운용손익이 퇴직급여가 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과세이연 신고 및 원천징수 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 5. [(DB 限) 퇴직소득세신고]

퇴직급여의 지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퇴직소득금액과 퇴직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인출이 발생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납부하므로, 사용자(회사)는 별도의 납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별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시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소득자 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확정급여형(DB)	사용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이연(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이연신고)</li> </ul>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li> </ul>

### 6.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시 관련 세금을 차감 후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당사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가입자가 당사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 이전시 가입자가** 원할 경우 현재 운용중인 자산의 매각 없이 그대로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 106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 제도의 중단

- 회사가 일시적 재정 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이후 타 사업자에게 이전되기까지 근로자의 부담금 납부,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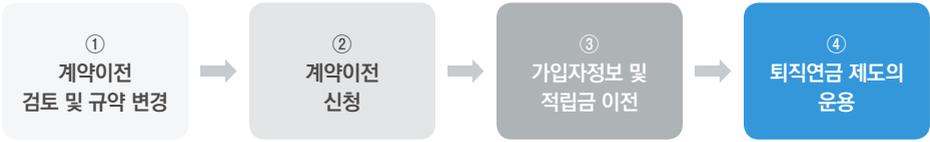
### 제도의 폐지

- 노사 합의로 폐지/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제도 폐지
-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DB/DC) 폐지신고
-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 107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I08 계약이전절차



### ①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변경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 후 이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요청합니다.

### ③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 ④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 109 과세체계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가 퇴직소득 수준별 차등공제(100%~35%)로 전환되어,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했던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2016년~2019년까지 4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하다가 2020년부터는 100% 개정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109 과세체계

### [퇴직소득세 예시]

입사일 2003.11.01~퇴사일 2020.10.30(17년 근무) / 퇴직급여 200,000,000원

계산순서	해당금액	계산식
① 근속연수공제	① 960만원	① 400만원 + 80만원 × 7년
② 환산급여 - ③ 차등공제환산과세표준	② 134,400,000 - ③ 77,180,000 = ④ 57,220,000원	{(퇴직금 - ①) × 12/17년} - (6,170만원 + 1,548만원)
⑤ 환산산출세액	8,512,800	④ × 과세표준별 세율
산출세액	12,059,800원	⑤ / 12 × 17년

### 연금/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조건의 미충족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퇴직연금에서 연금수령시 가입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일시금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소득의 원천 \ 수령형태	연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sup>주1)</sup> 이내)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sup>주1)</sup> 초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세(분리과세) <sup>주2)</sup>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단, 연금수령기간 10년 초과분부터 60% 적용)	이연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연금소득세(종합과세) <sup>주3)</sup> • 70세 미만: 5.5% • 70세~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기타소득세 16.5%
운용손익		

※ 상기 세율은 지방세 포함 세율입니다.

# 109 과세체계

[연금/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흐름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연금소득세 적용

주1) 연금수령한도란 한 과세기간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연금 수령 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연금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개시신청일)의 계좌평가액}}{\text{(11- 연금수령연차)}} \times 1.2$$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 까지 적용 (단,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주2)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지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3) 소득·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익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신고가 필요합니다.

## 109 과세체계

###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납입 · 운용시 세제혜택 >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할 경우 세전 퇴직급여가 이전되어, 퇴직소득과 운용 손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이 발생할 때까지 이연 됩니다.



### 가입자부담금 납입 시 관련 세제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부담금 외에 가입자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C/기업형IRP/개인형IRP: 연 1,800만원(연금저축계좌와 합산)</li> <li>• 전금융권 합산 납입한도이며, 한도 설정 후 가입자 부담금 납입</li> </ul>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50세 미만	50세 이상	
	~4천만원(~5.5천만원)	700만원	900만원	16.5%
	~1억원(~1.2억원)		700만원	13.2%
1억원초과(1.2억원초과)				
* 50세 이상 세액공제한도(900만원)는 2020년 납입분부터 2022.12.31까지 한시 적용				

## 110 확정급여형(DB)제도의 적립금 비율

### 재정검증

사용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sup>주1)</sup>은 기준책임준비금에 법정 최소적립비율(2019~2020년: 90%, 2021년 이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재정검증**” 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사용자(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검증결과가 적립부족일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 서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1) • 최소적립금 = Max(계속기준 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x 법정 최소적립비율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예측단위 적립방식으로 산정)
-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산정, 가입 기간에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

#### • 법정 최소적립비율

사업연도	2012.7.26~2013	2014~2015	2016~2018	2019~2020	2021~
법정 최소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도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연차에 따라 위의 법정최소적립비율보다 작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10 확정급여형(DB)제도의 적립금 비율

### 적립부족

재정검증결과 사용자(회사)의 보유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할 경우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을 포함하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대상이나,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호]

### 적립초과

재정검증결과 사용자(회사)의 보유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검증결과	조치사항
기준책임준비금×150% < 보유적립금	사용자의 적립금 반환 요구시 반환가능
기준책임준비금×100% < 보유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150%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능

**2020  
RETIREMENT  
PENSION PLAN**

2.

## 노후설계 및 투자관련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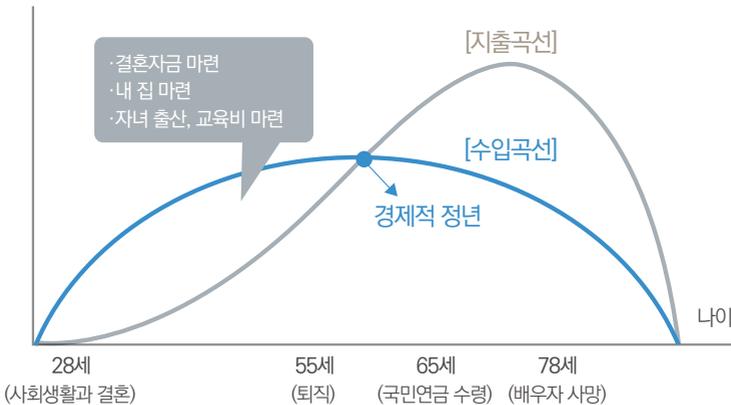


## I01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

일생 동안의 수입과 지출은 생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맞춘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예시]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생애주기	결혼기	자녀교육기	가족성숙기	노후생활기
자산관리 이슈	결혼/주택마련 자금	교육투자 자금	자녀결혼 및 은퇴자금	상속 및 의료자금
자산관리 계획	대출설계	보험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투자목적	자산축적	자산축적	자산관리	자산관리 및 소비
안전자산 : 위험자산	30 : 70	30 : 70	50 : 50	65 : 35
대표적 투자성향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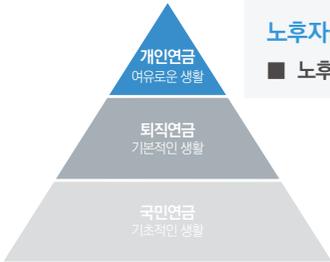


## I02 노후설계의 중요성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2010년 81세에서 2023년 91세로 이미 100세 시대에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은퇴기간 역시 20년에서 40년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퇴 준비를 위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103 노후보장 체계

경제적 정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후생활비는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개인의 저축, 보험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노후자금 산출방법

$$\blacksquare \text{ 노후자금} = \text{은퇴 직전 소득} \times \text{소득대체율}(60\sim 80\%) \times \text{노후기간}(20\sim 30\text{년})$$

[선진국형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 104 노후보장 상세설계

### [STEP 1] 퇴직 후 필요한 자금과 수입원 확인하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대체율 설정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 예상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퇴직 후 필요자금을 계산합니다.

### [STEP 2] 물가상승을 고려한 미래가치 계산하기

지금까지 계산한 퇴직 후 필요자금은 현재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퇴직시점에 필요한 돈은 물가상승분 만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 [STEP 3] 노후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규모 구하기

지금까지 퇴직 첫 해에 필요한 생활비가 구해졌다면, 이제는 노후 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노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은 퇴직 후 사망까지 노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퇴직 후 노후자금을 얼마의 수익률로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STEP 4] 가지고 있는 자금 확인, 추가로 필요한 돈 계산하기

3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총 노후자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수익금이 지나면서 불어날 것이고, 은퇴시점 받게 되는 퇴직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105 투자의 기본원칙

### ■ 분산투자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의 수단은 상당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투자 수단별로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며, 고유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연관성이 적은 투자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그 매입 시기를 달리하는 분산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산의 분산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가격변동이 다른 여러 개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인 예금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포함하는 것보다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서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 채권시장이 안 좋을 경우 주식시장이 이를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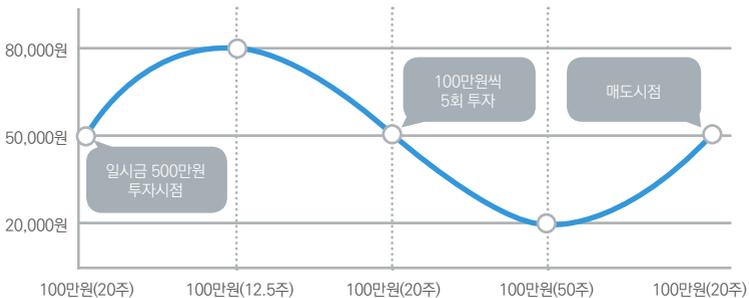
#### 시기의 분산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는 형태로 “Cost Average Effect(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Cost Average Effect(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매입하여 투자 타이밍을 분산시킴으로써 낮은 가격에서 많이, 높은 가격에서 적게 매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거치식으로 매입한 경우에 비해 적립식 매입방법의 평균매입단가가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500만원 일시금 VS 정액분할 투자 비교



구분	투입금액	매입주수	환급금	수익률
일시금	500만원	100주	500만원	0.0%
적립식(정액분할)	100만원X5회	122.5주	613만원	22.6%

## 105 투자의 기본원칙

### ■ 원칙과 목적을 갖춘 투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와 원칙이 중요한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도 목표와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욕심이나 보상심리로 인하여 투자에 실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목적은 분명히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원칙을 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 타이밍보다 준비가 먼저

주변에서 소위 대박이라고 불리는 투자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제 흐름과 투자흐름을 종합하여 봤을 때 그 후에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차를 타 투자에 실패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3가지 투자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 있어 원칙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투자위험을 대하는 성향에 맞게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투자는 실패의 지름길이며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수단이 있는 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투자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 1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운용방법

퇴직연금 가입시 매달(또는 매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용하여 수익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정기간 동안 투자하면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받는 원리금보장운용방법

둘째,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셋째, 첫째와 둘째 운용방법을 제외한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저위험 저수익	운용방법	상품종류	비고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 적금</li> <li>• 최저이자율을 보증하는 보험계약(GIC)</li> <li>•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li> <li>•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li> </ul>	자산관리계약을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분산요건을 갖춘 RP제외)에는 투자불가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li> <li>•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li> <li>• 투자자격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등</li> </ul>	
	그 외 (위험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혼합형, 주식형 펀드</li> <li>• 상장주식(DC/개인형IRP 불가)</li> <li>• 투자자격등급의 회사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투자금지증권은 운용불가</li> <li>•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운용</li> </ul>

고위험  
고수익

## 1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운용방법 변경

만기도래, 투자성향 변경,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상품운용방법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운용 방법 변경에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상품 변경: 기존 보유상품을 매도하여 그 매도자금으로 새로운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
- 투자비율 변경: 기존 보유상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향후 납입할 금액(부담금)에 대한 투자 비율을 변경하는 방법

###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하여 투자가능한도를 부여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2020  
RETIREMENT  
PENSION PLAN**

# 3. 우리가 궁금해하는 퇴직연금 Q&A

---

- Q1.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 Q2. 운용 방법 선택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Q3.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면 금융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Q4. 유안타증권 원리금보장형 운용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Q5. DC / 기업형IRP 가입자인데 퇴직연금이 잘 적립되고 있나요?
- Q6. DB가입자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퇴직금여를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Q7. 재직중인 회사가 폐업하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퇴직연금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Q8. 내 연금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 Q1.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효과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 (기업주)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 합니다.

#### 근로자

- 사외적립을 통해 외부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 권이 강화됩니다.
-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 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도 IRP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 Q2. 운용 방법 선택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운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분산투자가 필요

### 1. 어떤 운용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운용결과가 달라집니다.

: 운용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2. 안전한 운용방법에만 투자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고, 수익성이 높은 운용방법에만 투자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노후생활 설계·현재 재무상황 및 위험선호도를 고려한, 현명한 자산배분이 필요합니다.

### 3. 투자형 상품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말라’는 격언처럼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 투자위험과 기대수익률이 서로 다른 자산에 나눠 담으면, 가격 변화에 대하여 좀 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 4.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한 후에는 그 내용이 정확히 실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적립금운용현황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Q3.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면 금융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지시



적립금 운용지시결과 및 운용현황 조회·확인 방법

#### 1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조회·확인합니다.

#### 2 가입자 교육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실시하는 가입자 교육 시 적립금 운용수익, 운용현황 등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3 직접 조회·확인하는 방법

고객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직접 조회·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4 적립금운용현황 보고서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4. 유안타증권 원리금보장형 운용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매월 공시되는 원리금보장상품 및 금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myasset.com](http://www.myasset.com) > 퇴직연금HOME > 퇴직연금상품 > 원리금보장형상품

[공시예시] (적용기간: 2020.02.01~2020.02.29)

- 당사제공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상품유형	상품명	약정기간	DB	DC	IRP
RP	유안타퇴직연금전용RP	1년	1.60	1.60	1.60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타사제공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상품유형	상품명	약정기간	DB	DC	IRP
예적금	KB퇴직연금정기예금	1년	-	1.63	1.63
예적금	KDBpension정기예금	1년	1.74	1.64	1.64
예적금	대구은행퇴직연금용정기예금	1년	1.71	1.71	1.71
예적금	페퍼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2.20	1.95	1.95

- 확정급여형(DB) 제도: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IRP 제도: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Q5. DC / 기업형IRP 가입자인데 퇴직연금이 잘 적립되고 있나요?

DC(기업형IRP)는 연 총급여의 1/12 이상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매월 발송되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의 납입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예정일보다 2개월(규약에서 정한 유예기간)이상 지연되는 경우 가입자 이메일 등으로 [부담금 미납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통보지 등기발송)

[운용현황보고서 예시]

■ 가입자사항							
단체명	(주)우리들 회사		가입일	2017-12-13			
■ 부담금 납입현황							
납입일자	사업주부담금	가입자부담금	합 계	납입일자	사업주부담금	가입자부담금	합 계
2019-02	450,000	0	450,000				
2019-07	480,000	0	480,000				
2019년 납입총액			930,000	부담금 납입총액		4,258,670	

## Q6. DB가입자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퇴직급여를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 통상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합니다.

• 그러므로 DB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로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시기에는 DC로 운영하여 퇴직급여액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사업장도 있으니 재직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임금피크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 등

DB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①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32④)

임금피크제 도입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등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모든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7. 재직중인 회사가 폐업하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퇴직연금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파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를 상대로 직접 퇴직연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폐업사실 확인서 등 근로 기업의 폐업여부 및 폐업기업에서의 과거 근로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 상실 확인서류 중 하나

2.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DC는 당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DB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적립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16①(2) 및 §17②(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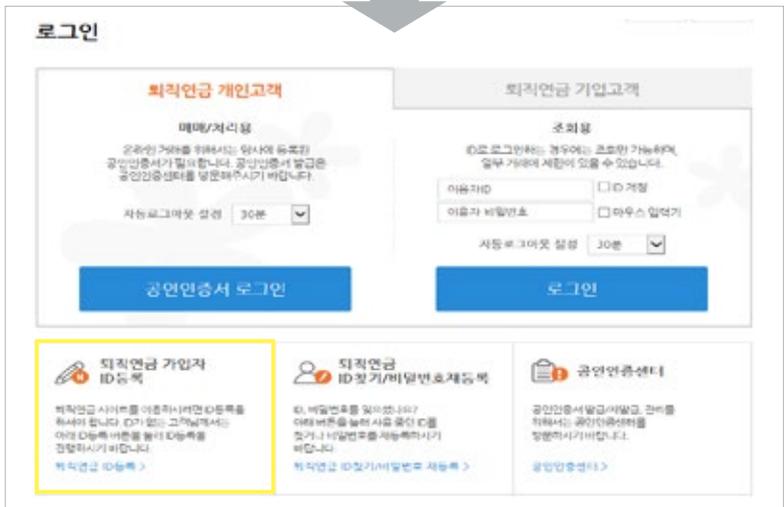
3.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이 필요하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거나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Q8. 내 연금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홈페이지 ([www.myasset.com](http://www.myasset.com) /퇴직연금HOME)

당사 홈페이지 로그인 가능한 인증서가 있어야 퇴직연금 아이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사에 계좌가 없으신 가입자는 [유안타증권 스마트 계좌개설] 어플 등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하시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Q8. 내 연금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여 내 연금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소개

- 1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http://100lifeplan.fss.or.kr>) 접속
- 2 서비스신청 및 이용동의 등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 3 연금조회 신청(3영업일 소요): 확인 가능시 알림메일 발송
- 4 연금조회 :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내연금조회' 클릭

### 통합연금포털 주요기능 소개

#### • 내 연금조회

본인이 가입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 가능

\* 가입일자, 총 납입금액, 중도인출 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

#### • 예시연금액 조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

#### • 노후재무설계

은퇴 시 연금자산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 안내

**2020  
RETIREMENT  
PENSION PLAN**

# 4.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연금보다 근육, 근육보다 관계

---





#### 4.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 연금보다 근육, 근육보다 관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재무적 자산인 '은퇴자금'이 필수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은퇴자금의 수준은 은퇴 이전의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은퇴 이후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  
계속 발생되므로 재무적 자산을 키워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비재무적 자산은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과 '관계' 등 무형적 자산을 말하며,  
이 비재무적 자산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  
노후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의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 4.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연금보다 근육, 근육보다 관계>

### 노후 건강의 자부심 '근육'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알았던 것처럼 매일 운동하라' 등의 제목들처럼 행복한 노후생활 조건으로 '근육'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우선 근육량이 부족한 어르신은 기대수명이 짧아집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사망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노인의 주요사망 중 하나인 '낙상' 가능성을 높이고 각종 질환에 걸렸을 때 회복을 더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 근감소증 증상

-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벅차다
- 1자로 걸을 때 균형을 잘 못 잡는다
-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 앉은 적이 있다
- 발목을 잘 접질리거나 쉽게 넘어진다
- 과일 한박스(5kg)를 나르는 것이 어렵다

#### 4.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연금보다 근육, 근육보다 관계>

### 노후 건강의 자부심 '근육'

근육을 키우기 위해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의 감소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며칠 전에 회사 앞에서 커피를 들고 가던 젊은 여성이 발끝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벌떡 일어나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젊은 여성에게는 그 넘어짐이 그저 창피함으로 끝난 에피소드였겠지만,

똑같은 상황이 근감소증을 겪는 노인에게 일어났다면 단순히 창피함보다는 골절로 이어질 확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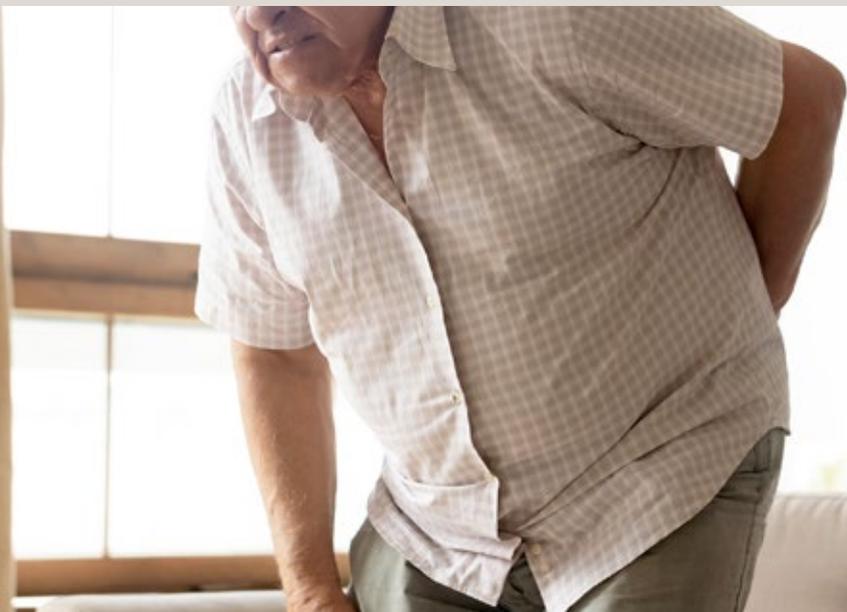
**'걸을 때 앞발 끝이 자주 걸린다'**

**'1년 이내에 넘어진 적이 있다'**

**'횡단보도를 신호 안에 건너는 게 버겁다'**

면 더욱 적극적으로 낙상 예방 운동을 해야 하는 대상자에 속합니다.

낙상은 보행 중에 많이 발생하고, 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고 할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허리나 다리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낙상 예방의 시작입니다.



#### 4.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연금보다 근육, 근육보다 관계> 행복한 노후에 이르는 Key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과 달리 자칫 소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신의 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으나  
관계는 타인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까지의 관계는 대부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직장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갈수록 관계는 자신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은퇴 후 직장을 나온 사람은 사회적 관계가 전부 변합니다.

은퇴 전 일을 중심으로 한 관계는 은퇴 후 노후까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특히 부부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 혹은 취미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근육을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금보다 근육이 강하다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노후에 더 유익합니다.**

## 4.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연금보다 근육, 근육보다 관계> 행복한 노후에 이르는 Key '관계'

# 1



### 가족관계 회복하기

노후에 가장 의지가 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은퇴 후 최고의 재테크는 배우자와의 관계개선'이라는 말도 있듯 은퇴 후에는 가족관계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40~50대 부부의 32%만이 은퇴 후 삶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특히 생애 주기별로 보면 많은 부부들이 자녀의 대학입시까지는 은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은퇴준비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은퇴 전부터 은퇴 후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눠 온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물론 건강, 사회활동 인간관계 전반적으로 은퇴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도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많아진 여유시간에 집안일을 함께하고 취향을 서로 존중하며 대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이었다면 직장에서 쓰던 권위적인 말투부터 버려야 합니다.

은퇴 전 상하관계식 교류가 몸에 배어 자신도 모르게 명령어가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뿐 아니라 가족간, 부부간의 많은 오해와 갈등이 말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명령어는 내려놓고 존중어를 사용하도록 연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투는 습관이고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습관화된 말투 먼저 고쳐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4.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연금보다 근육, 근육보다 관계> 행복한 노후에 이르는 Key ‘관계’



남녀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은퇴 후 부부관계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남편은 사회와의 관계단절에서 오는 고독감을 가족에게서 해소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의 은퇴시점에 맞춰 본인도 가사에서 은퇴하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관계를 넓히고 싶어합니다.

여자들은 나이 들수록 어디에선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다 못해 손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정리된 남자들은 새로운 관계 맺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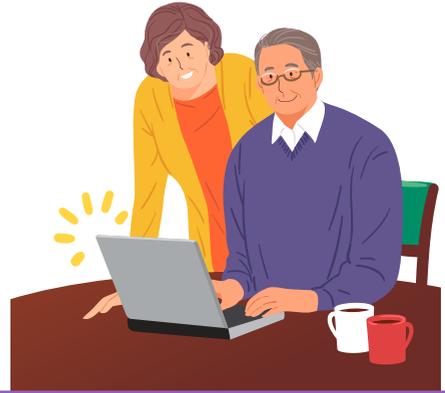
**차이를 이해하고 ‘따로 또 함께’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좋은 가족관계는 평생 지속적인 감정 교류로 만들어지니 은퇴전부터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4.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연금보다 근육, 근육보다 관계> 행복한 노후에 이르는 Key '관계'

# 2

## 먼저 연락하기



은퇴를 하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몇십년 동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대부분 연락이 끊기면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집밖으로 나가는 일도 줄어들고 약속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게 은퇴를 하면 학교친구나 동네친구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평소에 친구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먼저 연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색하지만 옛 친구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공통의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 할 친구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배우자가 먼저 만들어놓은 인간관계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연락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4.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연금보다 근육, 근육보다 관계> 행복한 노후에 이르는 Key '관계'

# 3

## 사회봉사활동 참여하기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시니어의 봉사활동 비중이 늘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창회나 동호회, 종교모임과 같은 친목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친목회에서 단순히 여행 등의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인생에 보람도 느끼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현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네에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고민을 들어주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따뜻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삼았던 전문분야를 살려 전문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 및 젊은 이들과 교류를 이어가는 봉사활동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리로 나누는 봉사, 동화구연,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취미활동을 전하는 나눔 봉사 방법이 있습니다.

#### 4. 우리가 알아야 할 은퇴준비 <연금보다 근육, 근육보다 관계> 행복한 노후에 이르는 Key '관계'



많은 시니어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지고 시니어에 대한 사회 인식도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이 들의 완성, 인생의 황혼기를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것이 많은 시니어의 바람일 것입니다.

**은퇴 후 비재무적 자산이 없으면 은퇴자금이 준비되더라도, 노후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비재무적 자산을 잘 키워나가야 합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 판단하기 보다는  
내 기준에 맞춰 균형 있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열쇠입니다.





www.myasset.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76 유안타증권 PB지원팀

고객지원센터 : 1588-2600

FAX : 02) 3770-5549

E-mail : pension@yuantakorea.com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유안타증권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 관련한 사내게시용 서면자료입니다.

